

Article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이 용 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
(606-7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Marine Scientific Research Regime in the UNCLOS
and Emerging Issues

Yong Hee Lee*

Division of Law,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Abstract : The 1982 UNCLOS provided very detailed provisions o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gave coastal state jurisdiction to regulate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its EEZ. However, due to lack of definition and criteria of MSR, there are some different views, even conflicts, regarding legal grounds for governing hydrographic surveys and oceanographic data collection by one state in the EEZs of other states. Some coastal states argue that those activities should only be conducted in the EEZ of other states with the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while it is the opinion of other states, including the U.S.A., that those activities can be conducted freely in the EEZ. This paper reviews different views and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work of the Korean government related to the activities.

Key words : marine scientific research, hydrographic surveys, operational oceanographic

1. 서 론

해양은 육지와는 다른 특이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해양환경이 가지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상호관련성 때문에 광범위한 국제공동조사와 자료 교류는 해양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해양과학의 기초연구를 통한 해양의 특성 규명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인간의 해양의존도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해양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차원, 지역차원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해양과학조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¹⁾

한편, 해양에서 인간의 활동이 주로 연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해역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동 해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해양과학조사가 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해역에서 실시되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 연안국이 규제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증대할 것이며 이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다.²⁾

우리나라도 신국제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¹⁾이용희, 권문상, 박성욱. 1998.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규범과 주변국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3(2), p. 165.

²⁾高林秀雄. 1986. 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科學的調査. *國際法外交雜誌*, 85(3), 177-178.

해 1994년과 1995년에 걸쳐 해양과학조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국내법이 정비된 1996년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뿐만 아니라 괌, 마셜공화국,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아, 피지, 인도네시아, 통가 등의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를 35건 신청하여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25건에 걸쳐 우리나라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신청을 접수하여 허가 또는 동의를 부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해양과학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여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규율하여 온 우리나라에게는 최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찰을 요구하는 두 가지 사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하나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외국인의 수로측량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오고 있는 운용해양학적 입장에서 행하여지는 해양자료수집활동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 4월 14일 일본의 독도주변수역 해양조사계획 발표 및 착수로 인하여 한일 양국간에는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은 바 있으며, 그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건 초기에 일본이 해양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수역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며, 동 수역에서의 해양조사는 국내법상 해양과학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³⁾ 동 해석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국내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의를 얻을 것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상 불법해양과학조사로 간주하여 나포 등의 조치⁴⁾를 취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시종일관 일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조사 구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며, 동 수역에서의 해양조사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⁵⁾

동 사건의 양국 간 쟁점요소는 비록 일본이 해양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와 같은 요소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주장을 살펴볼 때, 수

로측량선의 해양조사를 해양과학조사로 보고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조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2월 14일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항의서한을 받은 바 있다. 동 서한의 골자는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공해상에 설치한 부유식 관측부이(Argo 뜰개) 2개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입하여 자료수집활동을 하였는 바, 자국에 대한 사전예보없이 자료수집활동을 한 것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아르헨티나의 관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동 관측부이는 전 세계 해류, 조류, 파도, 수온, 염분 등의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지구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동해양조사연구사업(Argo)⁶⁾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남극해에 설치한 부유식 관측부이이었다. 이 부분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은 Argo사업과 같이 전 세계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해양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전 세계가 즉시적으로 자료를 공유하여 전 인류의 이익에 관련되는 기후변화와 해양안전에 활용하는 행위는 기존의 해양과학조사와는 다른 운용해양학(operational oceanography)이라고 개념하고, 운용해양학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운용해양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해양과학조사를 어떻게 구별하여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해양과학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이후 변화된 해양과학분야의 활동형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해양과학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두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과정에서 논의된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관계와 운용해양학활동과 해양과학조사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³⁾인터넷 연합뉴스, “일 해양탐사선 우리측 EEZ 무단 탐사계획 종합”. 2006.4.14 게재.

⁴⁾해양과학조사법 제13조.

⁵⁾海上保安廳, 日本海南西部海洋調査について, 2006.4.21.

⁶⁾Argo 사업은 The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s (WCRP) Climate Variability and Predictability Experiment (CLIVAR)와 the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 (GODAE)가 공동으로 1998년 계획에 착수하여 2000년부터 관측부이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까지 전 세계 해양에 3000개의 관측부이를 설치할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동 관측부이는 해양에 투하되어 일정시간동안 해류를 따라 침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수심 2,000미터 수층의 수온과 염분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송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http://w3.jcommops.org/cgi-bin/WebObjects/Argo> 참조.

2.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토의경과

유엔심해저위원회 및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토의⁷⁾는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의 보다도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통제요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강하게 제기되었다.⁸⁾ 첫째, 자원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해양과학조사를 통제하지 않는 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부존하는 자원으로부터 연안국이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주요군사강대국의 해양과학조사선의 경우 첩보활동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몇몇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해양과학조사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통제강화로 인하여 추진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가 거부되거나 불필요한 지연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담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반대를 야기하였다.⁹⁾ 이들 과학자들은 해양과학조사가 전체 인류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해양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경계에 의하여 통합된 연구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선진국의 지지를 받은 과학자들의 주장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보다도 더욱 강한 연안국 통제제도를 포함하는 형태로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제도가 마련되었다.¹⁰⁾

유엔심해저위원회에서의 토의경과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나타난 해양과학조사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앞서 개최된 유엔심해저위원회에서도 해양과학조사의 정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초기단계에는 심해저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해양과학조사가 논의되었는 바, 순수해양과학조사와 자원탐사를 구분하여야 하며, 양자는 별개의 제도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¹⁾ 이 과정에서 순수과학조사와 상업적 목적의 과학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었다. 가장 주된 문제는 ‘과학조사계획에 대한 사전접근가능성(accessibility beforehand of programmes of scientific research)’과 ‘조사결과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이었다.¹²⁾

동 위원회는 1971년부터 심해저자원개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양과학조사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해양과학조사의 정의가 주된 논점중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주로 해양과학조사와 해양과학조사 이외의 자원탐사 등의 행위를 구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¹³⁾ 그러나 2년간에 걸쳐 해양과학조사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규정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해양과학조사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로서는 해양과학조사와 자원탐사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의는 해양과학조사제도 전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해양과학조사를 다루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심해저위원회는 해양과학조사를 자원탐사와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해양과학조사 수행을 규율하는 제반규칙의 제정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¹⁴⁾ 이 과정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캐나다 안,¹⁵⁾ 4개 동유럽국가 안,¹⁶⁾ 몰타 안¹⁷⁾이 제출되었다. 3개 안의 공통점으로서 기초적 과학조사와 응용적 과학조사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증가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심해저위원회의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이전실무위원회 제3소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양과학조사의 정의를 초안한 바 있다.¹⁸⁾

“해양과학조사는 인류의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증대를 위하여 계획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지는 모든 연구 및 관련 실험이다. 단, 해양자원의 직접개발을 목

⁷⁾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제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林久茂 외 9인 공저, 1993, 海洋法の新秩序, 東信堂. p. 306-321 참조.

⁸⁾Churchil, R.R. and A.V. Lowe. 1999.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 Press. p. 403.

⁹⁾*Ibid.*, p. 403-404.

¹⁰⁾김영구. 2004.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p. 889.

¹¹⁾Soons, A.H.A. 1982.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aw of the Sea*.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p. 118.

¹²⁾*Ibid.*, p. 119.

¹³⁾문정식. 1988. 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64 p.

¹⁴⁾상계논문, p. 64-65.

¹⁵⁾UN DOC. A/AC.138/SC.III/L.18.

¹⁶⁾UN DOC. A/AC.138/SC.III/L.31.

¹⁷⁾UN DOC. A/AC.138/SC.III/L.34.

¹⁸⁾Soons, A.H.A. *supra* note 11, p. 120-121.

표로 하는 산업적 탐사와 기타 활동은 제외한다.”

이와 같은 초안에 대하여 일부국가는 해양과학조사가 산업적 또는 상업적 이익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초안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위의 정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담고 있는 다른 규정들이 간접적이지만 명쾌하게 해양과학조사의 의미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해양과학조사의 정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⁹⁾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토의경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해양과학조사제도는 제3위 원회와 동 위원회 산하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비공식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졌다. 초기단계의 토의과정에서도 앞서 개최된 심해저위원회의 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국가는 해양과학조사와 경제적 목적의 조사간의 구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양자 간의 구별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해양과학조사의 정의문제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1974년에 결정하였다. 한편, 1974년 제2회기에는 해양과학조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트리니다드앤토바고 안,²⁰⁾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그룹안²¹⁾이 제출되었으며, 해양과학조사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다루지지 않은 1975년 제3회기에도 9개 동구권국가 안,²²⁾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나이지리아안²³⁾이 제출된 바 있다. 4개 안을 살펴보면, 상기한 바 있는 유엔심해저위원회의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이전실무위원회 제3소위원회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1975년에 제출된 두 개안의 경우 이전의 안들과는 달리 순수해양과학조사와 상업적 목적의 조사를 구별함이 없이 평화적 목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한 조사로 해양과학조사를 정의하였다는 점이 다. 한편 제3회기에서는 77그룹을 대신하여 이란이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안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해양과학조사를 과학조사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의미가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조사활동을 연안국의 관할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는 없었다.²⁴⁾

제3회기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975년 5월 7일 작성된 비공식단일협약(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ISNT)²⁵⁾에서는 해양과학조사부분의 제1조에 다음과 같은 해양과학조사의 정의가 규정되었다.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연구 및 관련실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의 형태는 순수해양과학조사와 상업적 목적의 해양과학조사와의 구별, 평화적 목적의 해양과학조사와 기타 목적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구별도 제시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며, 동 형태는 연안국의 규율대상이 되는 해양과학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76년 제4회기에서는 비록 비공식토의기간동안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당분간 토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지만,²⁶⁾ 위와 같은 정의에 대해서 비공식법률전문가그룹(Informal Group of Juridical Experts)에 의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제시되었다.²⁷⁾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과 그 자원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연구 및 관련실험을 의미한다.”

이 안은 ISNT안과 비교할 때, 해양환경의 의미에 자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점이 주된 변화요소이고, 인간(man)을 인류(mankind)로 변경시킨 점도 가벼운 변화로 볼 수 있다.

1976년 제4회기동안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개정단일협상안(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RSNT)²⁸⁾에서는 제48조에 ISNT안을 기본으로 비공식법률전문가그룹안을 수용한 형태로 해양과학조사의 정의가 작성되었으며 해양자원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었다.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연구

¹⁹⁾Rosenne, S. and A. Yankov (eds.). 199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V,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442.

²⁰⁾UN DOC. A/CONF. 62/C.3/L.9.

²¹⁾UN DOC. A/CONF. 62/C.3/L.19.

²²⁾UN DOC. A/CONF. 62/C.3/L.26.

²³⁾UN DOC. A/CONF. 62/C.3/L.29.

²⁴⁾Alfred H.A. Soons. *supra* note 11, p. 123.

²⁵⁾UN DOC. A/CONF. 62/WP.8.

²⁶⁾Soons, A.H.A. *supra* note 11, p. 123.

²⁷⁾Rosenne, S. and A. Yankov (eds.). *supra* note 19, p. 447.

²⁸⁾UN DOC. A/CONF. 62/WP.8/Rev.1.

및 관련실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해양과학조사의 정의에 관한 토의는 1977년 제5회기와 1978년 제6회기에서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비공식협상의 결과 1978년 제7회기 결과 작성된 비공식통합협상안(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ICNT)²⁹⁾에서는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1978년 제7회기 속개회의와 1979년 제8회기에서 미국이 RSNT와 동일한 내용의 해양과학조사 정의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³⁰⁾

이러한 결과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지 못한 채 해양과학조사제도가 제정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비록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없지만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제규정속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으로 그 정의가 달리 필요하지 않다고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총의에 이르렀다고 서술하고 있는 입장도 있다.³¹⁾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해양과학조사제도에 대한 토의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었으며, 동 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³²⁾ 즉, 해양과학조사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3장에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과학조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어떠한 행위가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양과학조사의 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양과학조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 해양과학조사와 유사한 행위, 예컨대 수로측량, 군사조사 등 유사개념과의 관계에서 협약의 해석상 마찰이 야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새롭게 등장하는 해양조사형태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해양 이용국들은 해양과학조사와 기타 활동에 대한 구분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할권을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³³⁾

비록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는 내러져 있지는 않지만,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정의가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다. 최중화 교수는 해양과학조사를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자연현상에 관한 지식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실험적인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⁴⁾ 이와 같은 정의와 함께 해양고고학 및 자원탐사는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군사상 목적의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그 개념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⁵⁾ Soons 교수는 해양과학조사를 “해양환경 및 그 과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대양 및 연안해역에서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와 같은 정의에 동의하고 있다.³⁶⁾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제1항에서 “해양과학조사”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해양기상연구와 항공기를 이용한 활동도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³⁷⁾

3.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수로측량에 대한 적용 가능성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에 대한 입법 태도

수로측량(hydrological survey)이라는 용어는 1958년 영해협약에서는 단지 측량이라는 용어에 포함된 의미로 이해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수로측량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²⁹⁾UN DOC. A/CONF. 62/WP.10.

³⁰⁾Soons, A.H.A. *supra* note 11, p. 124.

³¹⁾*Ibid.*

³²⁾Wegelein, Florian H. Th. 2005. Marine Scientific Research - The operation status of research vessels and other platforms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11.

³³⁾Sam Bateman. 2005.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 Policy*, 29, p. 164.

³⁴⁾최중화. 2004. 현대국제해양법. 두남. p. 193.

³⁵⁾상계서, p. 193-194.

³⁶⁾Roach, J.A. and R.W. Smith. 1996. United States Responses to Excessive Maritime Claim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425.

³⁷⁾이용희, 권문상, 박성욱. 전개논문, p. 167.

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수로측량이라는 용어는 용어의 정의 없이 두 개의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21조 제1항 (g)에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분야로 수로측량이 규정되고 있으며, 제40조에서 국제항행용해협에서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외국의 수로측량선(hydrographic survey ships)이 측량활동(survey activity)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4조에서는 군도항로대를 통항중인 수로측량선은 국제항행용해협을 통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도국의 사전허가 없이 측량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로측량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측량(survey)이라는 용어는 위의 제40조 규정 이외에도 제19조 제2항 (j)호에서 영해를 통항중인 선박이 행하는 경우 유해통항이 되는 행위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측량이라는 단어는 심해저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제3부속서 제17조 제2항 (b)(ii)와 결의 II 제1항 (a)(i)에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로측량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상 특징은 수로측량을 규정한 모든 규정에서 측량 또는 수로측량이라는 용어와 병행하여 조사 또는 해양과학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1조 제1항 (g)에서도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hydrographic surveys)’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와 제54조에서도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선’, ‘조사와 측량활동(research and hydrographic survey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 제2항 (j)호에서도 ‘조사와 측량활동’이라고 조사와 측량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병기된 예는 제21조 제1항 (g)와 제40조가 전부이다.³⁸⁾

이와 같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입법태도에서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별도의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활동을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연안국의 영해, 국제항행용 해협, 군도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수로측량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분류하고, 연안국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동 행위를 국제법 위반행위로 보았다는 점이다. 셋째, 해양과학조사의 경우는 내수, 영해, 국제항행용 해협, 군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양공간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수로측량은 오로지 영해와 국제항행용 해협 및 군도항로대 관련규정에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과 같이 연안국의 관할수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입법태도는 수로측량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로측량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서 해석상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³⁹⁾ 즉, 어떠한 활동이 수로측량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양과학조사 또는 다른 조사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이들 활동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⁴⁰⁾ 둘째, 영해, 국제항행용 해협 및 군도항로대에서는 해양과학조사와 같은 정도로 연안국의 통제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행하여지는 해양과학조사에 관해서는 연안국에게 관할권을 부여하였을 뿐 수로측량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행하여지는 외국의 수로측량에 대하여 연안국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모든 국가가 연안국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별개의 사안이라기 보다는 상호 연관된 문제로 이해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의 법적 성격

전통적으로 수로측량이란 “해양의 수심 측량 및 파도, 해류, 조수현상의 연구, 수중암석·사주·기타 숨겨진 위험의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수로측량에서 수집된 대부분의 자료는 항행용 해도의 작성과 같은 항행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⁴¹⁾ 미국 국무성의 경우에는 수로측량을 “수괴(bodies of water)와 관련된 자료의 측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동 조사는 수심, 해저면의 형상 및 성질, 해류의 방향 및 세기, 조석의 높이 및 횡수, 조사 및 항행목적의 고정식 물체의 위치와 같은 자료 종류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⁴²⁾ 수로측량에 관한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³⁸⁾Roach, J.A. and R.W. Smith, *supra* note 36, p 446-447.

³⁹⁾Wegelein, Florian H. Th. *supra* note 32, p. 81.

⁴⁰⁾이용희, 강보석. 2005. 외국관할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제문제. *해사법연구*, 17(1), p. 99.

⁴¹⁾Anand, R.P. 1975. *Legal Regime of the Sea-B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Thomson Press. p. 102.; Brown, E.D. 1969.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egal Regime of Hydrospace*. *Indian J. Int. Law*, 9, p. 329.

⁴²⁾Wegelein, Florian H. Th. *supra* note 32, p. 80-81.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는 수로학(hydrography)의 정의를 “수로학이란 기본적으로 항해를 목적으로 하고 기타 연안활동, 연구, 환경보호 및 예측서비스 등의 목적 및 활동을 위하여 해양 및 연안지역의 특성을 측량하고 도면화하는 응용과학의 한부분이다.”라고 하고 있다.⁴³⁾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인 관측 및 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자료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해상교통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거의 대부분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⁴⁴⁾ 이상과 같은 수로학 또는 수로측량의 전통적인 정의를 살펴볼 때, 수로측량은 항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해양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해양과학조사와 구별되는 전통적인 수로측량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태도와 수로측량을 해양과학조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입법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은 별개의 개념이며,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를 수로측량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은 별개의 법적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태도는 여러 학자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⁴⁵⁾

이러한 개념의 문제와 연계하여,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이 별개의 개념이라고 전제한다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행되는 외국의 수로측량에는 어떠한 법제도가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로측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과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을 실시할 경우 연안국의 동의 등 일정한 형태의 연안국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⁴⁶⁾

먼저, 수로측량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구국가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한 반면에 수로측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안국의 허

가, 동의 또는 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수로측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논거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찾고 있다. 제58조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동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서구국가들은 수로측량의 경우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5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연안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⁴⁸⁾

이와 같은 서구국가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연안국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론의 논거를 살펴보면, 수로측량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안보에 위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안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수로측량의 해도작성자료 확보라는 의형상 목적 보다는 획득된 자료의 실질적 이용목적에 기준으로 수로측량행위의 해양과학조사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양과학조사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수로측량 조사자료의 상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외국의 수로측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수로측량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안보에 위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안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중국이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기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유는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due regard)’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수로측량은 평화적 목적조건에

⁴³⁾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2006. A Manual on Technical Aspect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1982. Monaco. p. 15-16.

⁴⁴⁾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2003. National maritime polices and hydrographic Services. Monaco. p. 1.

⁴⁵⁾김찬규. “일본의 ‘독도측량’ 저의 경계한다”. 『문화일보』 (2006.4.17), p. 8; 문정식, 전개논문, 71쪽; Soons, A.H.A. *supra* note 11, p. 7, 125; Roach, J.A. 1996.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New Law of the Sea, *Ocean Dev. Int. Law*, 27, p. 60; Gorina-Ysem, M. 2003. An International Regime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p. 49-50.

⁴⁶⁾CSCAP. 2002. Memorandum No.6: The Practice of the Law of the Sea in the Asia Pacific. p. 3.

⁴⁷⁾김찬규, “‘해류조사 시비’ 일은 착각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6.7.5), p. 31; Kim, Duk-ki. 2005. A Korean perspective, *Mar. Policy*, 29, p. 161; Valencia, M.J. and K. Akimoto. 2006. 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r. Policy*, 30, p. 706.

⁴⁸⁾Hayashi, M. 2005. Military and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in the EEZ: definition of key terms. *Mar. Policy*, 29, p. 131.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권리를 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로측량의 경우 전부 정부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해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⁴⁹⁾ 수로측량을 수행하는 수로측량선이 대부분 해군소속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로측량을 통하여 획득된 정보가 해도작성 이외에 군사적 목적을 비롯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수로측량은 잠수함작전을 지원하거나 기뢰의 부설 또는 소해작전을 위하여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평화적 목적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동시에 연안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다.⁵⁰⁾ 따라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을 하는 경우 이를 자유롭게 수행하게 할 수는 없으며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과 인도에 의하여 2001년과 2002년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미국 해군소속 수로측량선 Bowditch호와 영국 해군소속 수로측량선 HMS Scott호에 의해 수행되는 수로측량행위에 대하여 연안국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지시키고 배타적 경제수역 외곽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등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⁵¹⁾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 측량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영역과 관할하는 기타해역에서의 측량활동을 외국의 기구 또는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 주관부서와 군대 측량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중국 관련법규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 법은 위의 규정에 반하여 측량활동을 하는 경우 위법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측량성과와 측량도구를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한편, 사정의 경중에 따라서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기한 내 출국을 명령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취득한 측량성과가 국가비밀로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⁵²⁾

한편, 수로측량의 해도작성자료 확보라는 외형상 목적보다는 획득된 자료의 실질적 이용목적울 기준으로 수로측량행위의 해양과학조사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양과학조사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수로측량으로 획득된 자료가 전통적인

해도 작성 목적 이외에 다원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수로측량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의 활용목적이 자원개발 또는 환경보전 등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에 해당되는 사안의 경우 연안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IHO도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과거 수로측량은 해도편찬을 위한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나, 수로측량자료의 이용자그룹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매우 다양해졌음이 인정되고 있다. 수로측량자료는 해도 편찬뿐만 아니라 연안역 관리, 환경감시, 석유 및 광물자원의 개발, 법적 및 관할권문제, 해양 및 기상 모델링, 공학 및 건축설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수로측량자료의 유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료이용자들이 자료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⁵³⁾ 또한 수로학 서비스를 정의함에 있어 “해상교통의 안전, 해양환경보전, 국방 및 해양자원의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연안 및 해상에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정보를 생산하여 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⁴⁾ 이와 같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해도작성이라는 전통적 목적 이외에 수로측량의 결과가 해양환경보전, 국방 및 해양자원의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이용될 수 있다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수로측량은 그 자료의 활용목적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 수로측량선에 탑재되는 장비의 성능이 고도로 발전된 해양과학조사장비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조직의 기능이 단순한 해도작성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4월 독도주변 수로측량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수로측량선 明洋號와 海洋號는 각각 550톤 규모의 선박으로서 다중반사음향측심기(Multibeam Echosounder), 음파유속계(ADCP), 소모형 심해온도측정계(XBT)를 장착하고 있으며, 수온, 염분도 등을 측정하는 해양조사장비의 휴대도 가능하다. 또한 동 측량을 주관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정보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단순한 수로측량뿐만 아니라 해양관측, 대륙붕조사, 해양오염조사, 지자기, 중력조사, 해양연구 등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앞서

⁴⁹⁾Bateman, S. *supra* note 33, p. 168.

⁵⁰⁾*Ibid.*, p. 167.

⁵¹⁾*Ibid.*

⁵²⁾Van Dyke, J.M. 2004. Military ships and planes operat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nother country, *Mar. Policy*, 28, p. 34; 중국 측량법 제7조, 제51조.

⁵³⁾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98. IHO Standards for Hydrographic Surveys. Monaco. p. 1.

⁵⁴⁾Soons, A.H.A. *supra* note 11, p. 124.

⁵⁵⁾www1.kaiho.mlit.go.jp/tyomu.html

살펴본 선박 등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연관하여 살펴보면 단순한 수로측량활동만으로 동 수로측량선의 기능을 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⁵⁶⁾ 이러한 수로측량자료의 활용성에 따른 연안국의 관할권 부여 주장에 대해서는 Soons 교수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Soons 교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로측량을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와 해저관설부설의 자유에 부속된 국제적으로 적법한 행위라고 간주하여 자유로운 수행을 지지 하였으나, 수로측량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과 연계된 것이라면 연안국의 관할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수로측량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과 연계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 또는 주체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로측량자료의 상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연안국의 수로측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수로측량자료의 활용성 확대와 관련이 있다. 즉, 수로측량자료가 항행안전을 위한 것 이외에도 해양자원의 개발, 국가해양관할권 확장, 연안역 관리 등에 활용된다면, 이는 연안국으로서는 자국의 해양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IHO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인접해역에 대한 수로학적 지식의 ‘국가기반시설의 요소(as an element of national infrastructure)’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⁵⁸⁾ 이와 같이 수로측량자료가 연안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자산임을 고려하여 수로측량활동을 연안국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연안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로측량자료를 관리하고 배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논리의 법적 근거로서는 수로측량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 (a)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the zone)’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⁶⁰⁾

한편, 수로측량자료의 상업적 가치로 인한 연안국의 통제 필요성 주장은 위의 사항 이외에도 수로측량자료 자체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도 주장된다. 즉, 해도작성을 위해 획득된 수로측량자료가 실제로 무료로 타국에 배포되지 않고 있으며, IHO가 최근 수로측량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로측량으로

부터 획득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하는 인식이다.⁶¹⁾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적 이용행위는 전적으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설정취지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활동에 해당될 수 있는 수로측량행위를 연안국이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결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행되어지는 수로측량활동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그 근본적 이유는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의 정의에 대한 규정과 영해 외측해역에서의 수로측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됨으로서 수로측량의 기능이 전통적인 항행안전을 위한 해도작성에 머물지 않고 연안국 해양의 경제적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수로측량이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군에 의하여 그 기능이 수행되고 있음에 따라 수로측량결과와 군사적 활용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타국의 수로측량에 대한 연안국의 전통적인 거부감이 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수로측량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규정이 부재하며, 수로측량의 경우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5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관련된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에 해당됨으로 연안국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및 영국의 주장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관련규정의 부존재가 반드시 동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자기편의적 해석태도이며,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토의과정에서도 수로측량에 대한 연안국의 규제를 배제하는 취지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부존재 그 자체를 수로측량의 자유로운 수행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미 IHO와 같은 수로측량 전문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여러학자들이 수로측량자료가 항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적 개발을

⁵⁶⁾인터넷 연합뉴스, “일 측량선은 어떤 선박?”. 2006.4.19 게재.

⁵⁷⁾Soons, A.H.A. *supra* note 11, p. 157.

⁵⁸⁾Bateman, S. *supra* note 33, p. 169.

⁵⁹⁾*Ibid.*

⁶⁰⁾*Ibid.*, p. 169-170.

⁶¹⁾*Ibid.*

비슷한 연안국의 해양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때, 수로측량을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해양이용행위만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해석태도가 중국 및 인도 등의 국가실행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고, 호주나 캐나다도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은 연안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⁶²⁾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에서도 2002년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의 주장과는 다른 반대의 입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⁶³⁾ 수로측량을 향해 자유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이 자유롭게 수로측량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진 해석 태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로측량에 대한 일정한 연안국의 규제를 인정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동 규제의 방법을 살펴볼 때 수로측량을 해양과학조사의 일환으로 보고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를 수로측량에 바로 적용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수로측량의 범위가 확대되어 그 행위의 형태나 수단이 해양과학조사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부분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항행안전을 위한 해도작성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과 해양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학적 연구활동인 해양과학조사를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되, 수로측량이 연안국에 미치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영향이 해양과학조사가 연안국에 미치는 중요성과 대등하다고 판단됨으로,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을 행하는 경우 해양과학조사의 예와 같이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권리에 대한 해석상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전문가들이 회의⁶⁴⁾를 개최하

여 작성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도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⁶⁵⁾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동 지침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 인하여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장과 최근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 지침에서는 위의 규정과 함께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항행자료를 동 선박 스스로가 수집하는 것에는 동의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로측량이 해양과학조사의 동의유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⁶⁶⁾

4. 해양과학조사제도의 해양학자료수집활동에 대한 적용 가능성

운용해양학의 개념과 해양학자료수집활동

해양현상에 대한 이해, 해양개발을 위한 정보의 획득차원에서 전개되는 해양과학조사와는 달리, 기후예측이나 해상교통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국제해양학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운용해양학의 경우에도 해양과학조사의 개념과 연관하여 국제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운용해양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최근에서야 형성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앞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 높다. 그러나 운용해양학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IOC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형성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현재 운용해양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이나 소모형 해양 관측기기를 사용한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은 군사적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Argo와 같은 다양한 국제해양과학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다.⁶⁷⁾

일반적으로 운용해양학이란 용어는 “해양 및 대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례 측정행위와 동 자료의 신속한 해석과 전파”라고 정의되기도 한다.⁶⁸⁾ 즉, 해양 및 기

⁶²⁾Ibid., p. 170.

⁶³⁾Supra note 46 참조.

⁶⁴⁾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Valencia, M.J. and K. Akimoto, supra note 47, p. 704-707 참조.

⁶⁵⁾Ibid., p. 708.

⁶⁶⁾Ibid., p. 710.

⁶⁷⁾Kraska, J. 1995. Oceanographic and Naval Depolyments of Expendable Marine Instruments under U.S. and International Law. *Ocean Dev. Int. Law*, 26, p. 316.

⁶⁸⁾Wegelein, Florian H. Th. supra note 32, p. 20.

상의 현재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과거 기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상자료를 정리하고, 해양현상의 변화 추이나 형태에 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양에 대한 이해 및 예측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이와 같은 운용해양학의 개념과 해양과학조사의 개념 간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먼저, 해양과학조사는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실시 전에 설정된 가설 또는 전제의 입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원시적 자료(raw data)의 공개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범위와 시간면에서 특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운용해양학분야는 획득된 자료가 실시간 무제한적으로 자료획득자 또는 IOC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되며, 그 결과도 전 인류를 위하여 공개되고, 그 조사해역도 광범위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⁶⁹⁾

해양학자료수집활동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하부기관인 해양법전문가자문기구(Advisory Body of Experts on the Law of the Sea: IOC/ABE-LOS)는 IOC의 결정⁷⁰⁾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차 회의에 걸쳐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주내에서 ‘해양학자료수집활동(the collection of oceanographic data)’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체제에 관한 실행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이 의제의 주된 목적은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 또는 국제기구가 Argo가 사용하고 있는 profiling float 이나 surface drifting buoys 또는 XBTs를 이용하여 기후 예측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 해양학자료수집활동에 대하여 동 활동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틀 속에서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 의제의 핵심적 쟁점사항은 위와 같은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과학조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양과학조사와는 별도의 행위로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게된 배경은 Argo와 같은 국제해양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해양학자료조사기법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유엔해양법협약상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만약, 운용해양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이 해양과학조사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동 활동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연안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이 해양과학조사와는 구분되는 활동으로서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면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은 공해자유의 일환으로서 간주됨으로 연안국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제에 대한 회의 참가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회의 참가국이 취하는 입장은 위와 같은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과학조사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서는 i) 해양학자료 수집의 방법 및 수단이 해양과학조사와 동일하며, ii)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학자료 수집활동을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동 활동을 해양과학조사로 분류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3장의 규정에 따라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들은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이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연안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i)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을 해양과학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ii) 해양학자료 수집행위는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해자유의 원칙중 항행의 자유와 관련된 적법한 행위에 해당됨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해양학자료 수집이 가능하며,⁷¹⁾ iii)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과정에서도 세계기상기구(WMO)가 장기간 수행하여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기상자료 수집행위가 해양과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해당특위 의장이 밝혔다는 점⁷²⁾ 등을 제시하고 있다.⁷³⁾

3년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동 의제에 대한 토의는 위의 두 그룹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2007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⁶⁹⁾Ibid.

⁷⁰⁾IOC Resolution XXII-12 & XXIII-8 annex IV.

⁷¹⁾Kraska, J. *supra* note 67, p. 329.

⁷²⁾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Third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XIV(1982), p. 102-103.

⁷³⁾IOC/ABE-LOS VI/3 Prov.(7 April 2006) 참조. 특히, 미국의 입장은 ‘Com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Draft Practical Guidelines of IOC, within the context of UNCLOS, for the Collection of Oceanographic Data by special means” contained in Document IOC/ABE-LOS VI/8,20 Feb. 2006’ 참조.

소결론

IOC/ABE-LOS에서의 토의과정을 살펴볼 때, 유엔해양법협약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해양학자료수집행위에 대하여 각국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학자료수집행위를 공해자유의 원칙중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적법한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유롭게 동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본, 인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 다수의 국가는 해양학자료수집행위가 공해자유의 원칙중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동 행위를 해양과학조사에 포함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수국가의 태도는 해양학자료수집행위의 성질, 수집되는 자료의 종류, 자료 수집의 수단 및 동 수단에 부착되는 센서의 종류, 자료수집행위의 후원자 등에 의하여 해양학자료수집행위의 본질이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동 행위를 자유롭게 시행하게 하는 경우 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운용해양학적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학자료수집은 그 목적이 항행의 안전과 기후변화예측을 위한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의 촉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해양과학조사의 본질적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해양학자료수집의 대상이 되는 염분도와 같은 자료는 잠수함작전에 필수적 자료로 활용되며 동시에 해양생물자원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양학자료수집에 사용되는 기기들이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기기와 일치하며, 그 운용주체도 해양과학자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목적만을 가지고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을 해양과학조사와 다른 개념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밖에도,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이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탄력적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기된 문제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상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적 개념을 등장시켜 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부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제해양질서의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적 안정성 및 일체성을 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더욱 커다란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은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행되는 외국의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제도에 따라 연안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학자료수집활동이 부당한 동의 유보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 의한 해양학자료수집을 지양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이 권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5. 결 론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 (b)(ii)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받고 있다. 동 협약 제246조 제1항에서 “연안국은 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제56조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동 권리의 해석·적용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⁷⁴⁾ 특히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는 수로측량이나 해양학자료수집과 같이 해양과학조사와 유사한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 법제도의 불비를 이유로 한 다름을 야기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측량을 공해의 자유 중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행위로 간주하고 동 행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 적용상이나 실질적인 행위의 이행 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수로측량의 자유를 전제로 할 때, 명목상의 수로측량을 이유로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선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로측량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안국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안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고도의 감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국의 수로측량선 활동 시 근접하여 감시하고, 수로측량선이 수로측량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불법조사를 이유로 동 선박을 나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수로측량선이 대부분 해군소속의 군함이거나 정부의 비상업용 선박임을 감안하면 연안국은 군함 등의 관할권 면제⁷⁵⁾로 인하여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단지 동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국의 협약 위반

⁷⁴⁾최종화, 전거서, p. 205-206.

⁷⁵⁾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

에 대한 책임⁷⁶⁾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광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고도의 감시망을 구축하고 사전 통보 없이 수행되는 수로측량선의 행위를 추적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행 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전세계 국가 중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수로측량선의 행위가 순수한 수로측량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로측량 이외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로측량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연안국의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⁷⁷⁾

따라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수로측량에 대해서도 해양과학조사에 준하는 제도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연안국의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48조에 따라 수로측량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출받고 그 행위의 전반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자국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제249조에 따라 자국의 과학자를 동 활동에 참여시키거나 자국의 대표를 선박에 승선하게 하여 활동이 계획된 목적과 내용에 따라 이행되는 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동 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수로측량국의 입장에서도 동 활동이 연안국의 동의 유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안국이 동의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목적에 따라 수로측량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수로측량의 원래적 목적이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라는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동 활동을 통하여 획득된 자료를 연안국에게 제공하는 것도 수로측량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수로측량에 대한 연안국의 통제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입법방식을 기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해양과학조사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동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률이므로, 법적 개념상 해양과학조사와 구분되는 수로측량을 해양과학조사에 포함하여 규율하는 것은 본래 입법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 제1항 (g)호에 근거하여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에 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과학조사법에서는 영해와 기타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수로측량에 대한 수로업무법에서는 외국인의 수로측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수로업무법의 입법의 불

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로업무법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이 행하는 수로측량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내법의 입법형식과 유엔해양법협약상 부여된 우리나라의 입법권 행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로업무법의 일부개정방식은 외국인에 의한 수로측량의 장을 신설하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분하여 외국인의 수로측량에 대한 허가 또는 동의 부여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해양과학조사법을 원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해양학자료수집에 관하여는 동 개념이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박 이외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이 우려되는 경우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의 해양과학조사 정의를 개정하여 모든 해양과학조사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외국인의 수로측량과 해양학자료수집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과 해양학자료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공히 따라야 함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태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 사

이 연구는 “북서태평양이 한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을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심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김영구. 2004.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992 p.
 김찬규. 2006. 일본의 ‘독도측량’ 저의 경계한다. 문화일보. 2006.4.17.
 김찬규. 2006. ‘해류조사 시비’ 일은 착각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6.7.5.
 문정식. 1988. 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64 p.
 이용희, 강보석. 2005. 외국관할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제 문제. *해사법연구*, 17(1), 89-112.
 이용희, 권문상, 박성욱. 1998.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규

⁷⁶⁾유엔해양법협약 제263조.

⁷⁷⁾Soons, A.H.A. *supra* note 11, p. 157.

- 범과 주변국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3(2), 165-184.
- 인터넷 연합뉴스. 2006. 일 해양탐사선 우리측 EEZ 무단 탐사계획-종합. 2006. 4. 14.
- 인터넷 연합뉴스. 2006. 일 측량선은 어떤 선박?, 2006. 4. 19.
- 林久茂 외 9인 공저. 1993. *海洋法の新秩序*. 東信堂. 434 p.
- 최종화. 2004. *현대국제해양법*. 두남, 586 p.
- 海上保安廳. 2006. *日本海南西部海洋調査について*. 2006. 4. 21.
- Bateman, S. 2005.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 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 Policy*, 29, 163-174.
- Churchil, R.R. and A.V. Lowe. 1999.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494 p.
- CSCAP. 2002. Memorandum No. 6: The Practice of the Law of the Sea in the Asia Pacific. 4 p.
- Gorina-Ysem, M. 2003. *An International Regime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668 p.
- Hayashi, M. 2005. Military and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in the EEZ: Definition of Key terms. *Mar. Policy*, 29, 123-137.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98. *IHO Standards for Hydrographic Surveys*. Monac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2003. *National maritime polices and hydrographic Services*. Monac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2006. *A manual on technical aspect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1982*. Monaco.
- IOC/ABE-LOS VI/3 Prov. (7 April 2006).
- Kim, Duk-ki. 2005. A Korean perspective. *Mar. Policy*, 29, 157-161.
- Kraska, J. 1995. Oceanographic and naval deployments of expendable marine Instruments under U.S. and international law. *Ocean Dev. Int. Law*, 26, 311-355.
-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Third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XIV, 1982.
- Roach, J.A. and R.W. Smith. 1996. *United States Responses to Excessive Maritime Claim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676 p.
- Rosenne, S. and A. Yankov (eds.). 199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V. Martinus Nijhoff Publishers. 769 p.
- Soons, A.H.A. 1982.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aw of the Sea*.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383 p.
- Valencia, M.J. and K. Akimoto. 2006. 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r. Policy*, 30, 704-711.
- Van Dyke, J.M. 2004. Military ships and planes operat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nother country. *Mar. Policy*, 28, 29-39.
- Wegelein, Florian H. Th. 2005. *Marine Scientific Research - The operation status of research vessels and other platforms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393 p.

Received Sep. 4, 2006

Accepted Sep. 15, 2006